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립대학의 통폐합)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10조의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이행에 따른 경우
2.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4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우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장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회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6인을 추천한다.

-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출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록 공개) ①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학교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심의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전담기관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담기관에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난해의 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재정진단 및 구조개선 조치

제1절 재정진단

제9조(재정진단) ① 전담기관의 장은 재정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재정진단 편람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1. 재정진단 목적 및 대상
2. 재정진단 지표 정의 및 산출식
3. 재정진단 평가에 필요한 결산서 등 기초자료
4. 재정진단 절차 및 일정 등

②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결산 보고기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 실시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 보고한 후 사립대학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립대학은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접수 종료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이의신청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후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 보고하고 이의신청한 사립대학에 즉시 통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의신청 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될 경우, 1회에 한하여 기한을 10일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를 교육부장관과 이의신청한 사립대학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재정진단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없거나, 기초자료만으로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없는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 할 수 있다.

1. 외부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에 관한 사유
2. 사립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임금 등 체불 현황
3. 기초자료의 미비로 결산 및 공시자료의 사실관계
4. 경영위기대학 지정 해제 신청서의 기재 내용 및 증빙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
5. 그 밖에 재정진단 실시를 위해 전담기관의 장이 실태조사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항

③ 전담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재정진단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실태조사 대상을 구분하며, 서면 실태조사 외 추가적인 심층 검토와 현장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에 기초자료 외 필요한 자료의 추가 제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요구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해제)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할 수 있다.

1.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된 대학
2. 경영위기대학 지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오류가 있는 기초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재정진단 수행 및 결과 확정이 곤란한 대학
3. 결산서 미제출, 결산자료 누락·미비 제출 대학, 기초자료 미공시, 실태조사 거부 또는 방해로 재정진단 수행 및 결과 확정이 불가능한 대학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경영위기대학 지정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대학에 통지하고 전담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해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경영위기대학 지정 해제 여부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해당 대학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구조개선 조치

제12조(구조개선이행계획 이행점검 및 변경) ①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을 포함한다.)과 경영위기대학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경영자문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0조에 따른 구조개선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이행계획에 법 제16조의 재산 처분 및 교육사업 양도 내용이 포함된 경우 위원회 심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용 계획과 교육부 허가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구조개선 조치의 이행실적을 이행계획 승인일로부터 3개월마다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시정 명령 이전에, 법 제10조제5항에서 정한 이행실적 점검 결과의 이의신청 여부를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으로부터 확인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구조개선 조치의 이행 상황, 경영위기대학의 재정 여건,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 제14조에 따른 경영자문을 추가적으로 실시한 후 이행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구조개선명령 실시) ①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에게 구조개선을 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해당사실을 해당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구조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구조개선명령 이전에, 법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구조개선 명령 대상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에게 구조개선 명령 해당 여부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구조개선 명령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구조개선명령 시 경영위기대학의 장,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재산 출연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구조개선명령에 관한 사항

2. 대학운영 계획 및 재정기여에 관한 사항 등

⑤ 제4항의 이해관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

2. 경영위기대학의 교직원 대표기구의 장

3. 경영위기대학의 학생·학부모 대표기구의 장

4. 그 밖에 위원회가 의견수렴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 한 자

제4장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지원 및 특례

제14조(경영자문) ①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을 포함한다)과 경영위기대학의 장은 법 제14조에서 정한 경영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자문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자문 대상교 선정에 관한 사항
2. 경영자문 수행 시기 및 방식에 관한 사항
3. 경영자문 수행 절차 및 방법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경영자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자문을 수행함에 있어 자문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적립금 사용의 특례) ①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법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구조개선 이행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1항의 적립금을 구조개선 수행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사용 시 특정목적적립금, 건축적립금, 연구적립금, 퇴직적립금, 장학적립금의 순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적립금의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 절차를 준용하며, 구조개선 수행을 위한 계정을 신설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조개선 적립금 규모 및 사용 내역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구조개선 이행실적 보고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재산 처분의 특례) ①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법 제10조

에 따라 수립한 구조개선 이행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교육·연구에 사용 중인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학생 및 교직원 보호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②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법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구조개선 이행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수익용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산 처분 및 교육사업의 양도 과정에 대해 점검하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의 재산 처분 및 교육사업양도에 따라 확보된 재원은 구조개선 수행을 위한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규모 및 내역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구조개선 이행실적 보고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사립대학 통폐합 지원을 위한 특례) ① 경영위기대학이 법 제17조에 따라 통·폐합을 추진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4제2항의 교원 확보율 기준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한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4제2항제2호에서 정한 교원 확보율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단, 교사, 학생 정원,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5장 폐교 및 해산

제18조(폐교·해산의 절차) ①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폐교 또는 해산 인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법인 및 대학 기록물의 처리 계획
2. 학교법인 또는 임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으로서 폐교 및 해산 인가 후 재정적 보전을 요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시에는 폐교 대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활용 방안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잔여재산 출연 법인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중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4.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③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잔여재산 일부를 출연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출연이 제한된다.

1. 최근 10년 이내에 출연 대상인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회

계부정, 횡령·배임, 뇌물수수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 경우

2. 학교법인 해산일을 기준으로 출연 대상인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이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휴업한 사실이 있거나 지속적인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4. 출연 대상 공익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의 자산규모가 출연재산의 3배 미만인 경우
5. 출연대상 법인 이사가 최근 10년 간 해산된 학교법인의 이사였거나 그 이사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 관계인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잔여 재산 일부의 출연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해산정리금 지급 제한) 학교법인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적 보전에 필요한 상당한 금액에 이행하지 않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산금만큼을 더한 금액의 해산정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해산정리금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산정리금은 학교법인에 대한 재정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 서정한 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 정한 자가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사립학교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300만원 이상 벌금형 받고 재정적 보전이 필요한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라 해임된 자

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산정리금 지급에 앞서 청산인은 학교법인의 청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납부
2. 교직원에 대한 체불임금이 존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체불임금 등 채무변제
3. 청산절차 운영비 등 청산 비용 부담
4. 기타 학교법인의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부담

④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하는 잔여재산에 대한 처리 과정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및 과태료

제22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26조 제1항제1호	300	600	1,000
나. 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구조개선이행계획 또는 변경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법 제26조 제1항제2호	500	700	1000
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26조 제1항제3호	500	700	1000
라.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이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6조 제1항제4호	500	700	1,000
마.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폐교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6조 제1항제5호	150	300	500